

1998. 5. 8

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

기획총무위원회

<전문위원 박종근>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제안사유
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순국 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등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제 지원방안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제2조(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)제2항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개정
-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면제대상 자동차 확대
 - 기존 :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
 - 확대 :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
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
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- 제2조제3항을 신설
 -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 - 1.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
 - 2. 천재·지변·화재·교통사고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
 - 3. 폐차가 증명되는 자동차
 - 4.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

■ 관련근거

-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7조, 제8조, 제9조
-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내부부(시)준칙안
세정 13400 - 244 ('98. 2. 18)
- 입법예고 : '98. 3. 6 ~ 3. 25 (20일)
- 조례·규칙심의회의심 의 : '98. 3. 26

■ 검토의견

-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
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허세 감면 내용중
가족소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
까지로 확대토록 한 내용과
- 소유의 한계를 매매알선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, 매도불가 반환된 자동차,
천재지변, 화재, 교통사고등으로 파손된 자동차, 폐차가 증명되는 자동차,
신고수출된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
것으로 본다를 신설한 것임.